

▶特輯—壬午軍亂 110 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壬午軍亂은 日本의 韓國侵略에 어떠한 作用을 하였는가?

趙 恒 來

(淑明女大 韓國史學科 教授)

머 리 말

한국과 일본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다각도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18세기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한국문물의 東流現象으로 일관해 왔으나 19세기 중엽부터는 그 양상은 달라져서 강압을 동반하는 逆流現象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역류현상에 대한 일련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이후의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일간에 나타난 새로운 국면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어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 역시 선행된 연구¹⁾를 참조하여 이 시기에 한·일관계에 나타난 새로운 국면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임오군란을 전후한 일본의 한국침략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군란은 日本의

한국침략에 어떠한 작용이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軍亂직전의 日本의 對韓浸透정책

江華島條約이 체결된 직후에 조선은 金綺秀를 修信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들 일행은 귀국하여 일본이 특히 무기·전신·기선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서양 각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그런 각종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¹⁾ 이 동안 일본은 花房義質을 공사로 파견하여 몇 차례의 교섭 끝에 서대문 밖 清水館(天然亭)을 가공사관으로 삼아 상주하게 되었다.

조선정부가 세계사정에 좀더 눈뜨게 된 것은 高宗 17년(1880) 金弘集 일행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였다. 그들의 임무는 앞으로 마련될 通商章程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향을 살피고 일본 내의 물정을 다시 자세히 알아오는 데 있었다. 이 때 김홍집은 일본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고, 감명된 바 있어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귀국할 때 淸國參贊官 黃遵憲이 지은 『朝鮮策略』이라는 책자를 얻어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 조선책략에는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시키

1) 본고의 선행적인 연구로는 田保橋潔, 〈壬午變亂 濟物浦條의 締結〉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宗高書房, 1972; 白鍾基, 〈壬午軍亂때의 日本의 對韓考察에 관한 政策〉 『成大論文集』10, 1965 申國柱, 〈壬午軍亂〉 『近代朝鮮外交史』, 探求堂, 1965; 彭澤周, 〈壬午事變と日淸兩國의 對策〉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 東京, 士高書房, 1969; 山邊健太郎, 『壬午軍亂について』 『日本の韓國併合』, 東京, 太平出版社, 1970; 裴成東, 〈壬午事變과 甲申政變을 전후한 政治의 展開〉 『日本近代政治史』 法文社, 1976; 姜在彦, 〈朝鮮의 開國と壬午軍亂〉 『季刊 三千里』 30, 1982; 高橋秀直,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 『史林』 72권 54, 1989; 同, 〈壬午事變と明治政府〉 『歴史學研究』 601, 1989; 坂井後樹, 〈日本歴史教科書の批判〉—壬午軍亂から 下關係約まで— 『白山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 1991 등이 있다.

2) 趙恒來, 〈對日修好와 丙子修信使行考〉 『開港期對日關係史研究』, 螢雪出版社, 1973, pp. 13-48.

려면 親中國·結日本·聯美國의 외교정책에 의해서 자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었다. 김홍집은 이 책을 소중히 여겨 귀국 즉시 국왕에게 바쳤고 고종은 이를 여러 대신에게 검토케 하였다. 이리하여 대신들은 정세의 변천에 따르는 외교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선책략을 복사하여 전국의 儒生들에게 돌렸다. 그 목적은 유생들의 식견을 넓혀 그들의 전통적인 夷狄觀이나 斥邪論에 대하여 계몽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는 빛나가 실제에 있어서 유생들의 전면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완고한 유생들을 비롯한 국내의 鎖國攘夷論자들은 이 책략을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섰다. 嶺南萬人疏는 그러한 반대운동의 대표적인 예였다.³⁾

이들 유생들의 修好通商 반대론은 시대적인 추세에 다소 둔감한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적 침략이라는 대외적 모순에 철저히 저항하였던 척사파들이 개화파가 지녔던 자기제약을 보완해 주는 相補的 歷史기능을 수행했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유생들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정부의 개화정책을 승인하여 고종 18년(1881)에는 또다시 대규모의 이른바 紳士遊覽團이라는 일본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 때 趙準永·朴定陽·魚允中·洪英植 등이 일본에 건너갔다. 이들은 70여 일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공장시설, 교육기관, 군사·경찰제도, 세관 등의 직제와 事務章程 등을 한역 기술해 왔다.⁴⁾ 한편 金允植을 領選使로 하여 문무자제 중 총명한 자 100여 명을 데리고 청으로 갔다. 김윤식을 수행한 유학생 일행에게도 天津機器局에서 전기·화학·製圖·製鍊·기초기계학 등은 물론 외국어까지 학습을 하게 되었다.⁵⁾ 그런데

3) 趙恒來, 〈庚辰修信使와 朝鮮策略의 波紋〉 위의 책, pp. 81-101.

4)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 27, 1965, pp. 105-142.

5) 權錫奉, 〈領選使行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pp. 277-312.

신사유람단은 일본의 문물제도를 시찰하기 위하여 파견된데 대하여, 영선사는 청국에 대한 외교활동과 군비정돈이 주목적 이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사절단의 파견은 세계의 진문에 발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표면화되는 출발신호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 의거하여 군제를 비롯한 행정기구의 개혁 등 개화시책에 따른 내정개혁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고종 18년(1881) 3월에는 종래의 비변사를 부활시켜 이를 중심으로 청의 제도를 참작하여 統理機務衙門을 신설, 중요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삼고, 그 밑에 12司를 두어 각기 해당 사무를 分掌하게 하였다. 또 과거의 구식군대인 5군영은 武衛營·壯禦營의 두영으로 개편하였으며, 그 장을 大將이라 하여 왕의 친근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는 새로이 別技軍을 조직하였는데, 이 별기군은 왕의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이 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군란의 도화선이 되었던 군제개혁 이었다. 이 군제개혁은 어떠한 표면상은 일본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만은 사실이었는데, 이 개혁을 예워싸고 國論이 매우 소란하였으며 심지어는 양반관료 사이에서도 심각한 대립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군제개혁 추진파는 주한일본공사 花房義質이 약간의 소충을 기증하고, 신식무기의 조련과 군제개편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종래의 군제를 혁파하였다.⁶⁾ 즉 5營의 군분에서 지원한 80명을 특선하여 이를 別技軍(일명 倭別技)이라 하고 신식 교련을 습득케 하였다. 이 별기군에는 花房공사의 추천에 의해서 일본 육군공병소위 掘本禮造를 군사교관으로 초빙하여 이른바 신식인 일본식 軍事教練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교련생은 당시 5영의 구식 군인보다는 월등히 많은 급료와 좋은 피복을 지급받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 때 教練司堂上에는 민씨 세도정권의 새로운 지도자인 閔泳翊이 기용되었으며, 이들 개화파

6) 日本外務省藏版, 『日本外交文書』14, pp. 365-369, 文書番號 153號 <朝鮮國ニ於テ鎗銃隊創設ノ件>; 『高宗實錄』권18, 辛巳 4月 22日 참조.

들은 민영익을 중심으로 하여 개화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그러나 이같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던 軍備強化策은 그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유생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는 속에, 일본 장교의 교도 아래서 일부 특수부대의 편성만을 보게 하는 것으로 끝냈던 것이다.⁷⁾

花房이 이 때 어떠한 저의를 갖고 군제개혁을 권유했는지 그 진상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 때 征韓論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878년에 설치된 參謀本部에서는 청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비확장과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순전한 호의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고 엿볼 수 있다. 즉 일본이 권유한 이 군제개혁에는 표면상으로는 군대의 근대화를 기함으로써 고종, 척족의 호감을 사자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겠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선군대를 일본식 훈련과 일본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차 일본 침략세력에 예측시키려는데 의도가 있었다.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도 그 개혁 때문에 도태되는 구군대의 소란만은 확실히 예기됨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상 그 군대의 弱體化는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조선왕조의 쇠퇴를 촉진하는 결과로 될 것이니, 말하자면 일본은 이러한 두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그 개혁이 참다운 군대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쇠퇴를 촉진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군제개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목표라는 것은 대륙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을 청국의 세력권에서 이탈시켜 일본에 예측시키려는데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대외적 면에 있어서도 1880년에 부산·원산에 영사관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한·미 사이에 修交 앞선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

7) 崔炳鈺, 『開化期の 軍事政策研究』, 弘益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7, pp. 132-146.

8) 白鍾基, 앞의 논문, p. 166.

나 이것이 뜻대로 추진되지 않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수신사 김홍집에게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歐美諸國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에 감화를 받게 된 김홍집은 귀국 때 주일 청국참찬관 黃遵憲의 『朝鮮策略』을 가지고 와서 이를 고종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권유에 의한 열강과의 수교추진이나 이른바 혁신정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大院君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 정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게끔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일본에 대한 개항을 나라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민씨척족정권을 타도하고자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같이 官民의 대립은 집권자인 민씨척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배척으로 표시되었다. 이리하여 민중들은 가혹한 착취를 일삼는 집권층을 원망하였고, 일본 상품의 도입과 미곡수출로 인한 경제의 파탄으로 일본을 증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한 閔氏政權의 개화정책이 생활고를 유발하였다는 생각을 민중에게 안겨 주었다. 즉 민씨정권이 일본침략세력에 野合하여 불평등한 굴욕적인 수호조약을 체결한데 그 죄악이 있다는 것이다. 민씨 일당도 이러한 민중의 불안과, 그 불만을 이용한 재야 유생들의 척사운동의 위협을 모를리가 없었다. 그들은 구실만 있으면 이 위협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릴 심산이었다. 이 때 터진 것이 李載先 추대음모사건 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팽배한 민중의 불만과 유생들의 척사운동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정부에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중대시하고, 이 기회에 유생들의 척사운동과 대원군 재기를 억눌러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야보수파와 대원군일파의 정부에 대한 증오는 더욱 깊어져 갔고, 이에 더하여 민중들의 불평과 구식군인들의 불만은 뿌리깊이 스며 들어갔다. 이같은 국론의 분열과 기강의 혼란, 사회정세의 불안은 앞으로 어떠한 사태를 초래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II. 軍亂勃發과 日本의 對韓侵略정책

고종 19년 7월 23일(음 6.9) 드디어 군란이 폭발하여 병사들은 민씨 정권의 세도인 閔謙鎬 등을 처단한 후 원한의 下都監을 습격하고 일인 교관 堀本禮造 소위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는데, 이 때 花房公使 일당은 防戰에 노력하는채 하다가 공사관에 방화한 후 난군의 重圍을 돌파하고 仁川으로 도피하였다. 인천부사 鄭志鎔은 花房 일행을 관아에 수용하고 매우 친절한 대우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달 25일에는 月尾島로 향발하여 그곳에서 영국 측량선 飛魚(Flying Fish)號에 탑승하고 일본 長崎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花房 일행이 조선을 떠나게 된 표면상의 이유는 그들이 인천관아에 유숙중 府兵叛亂分子로부터 습격을 당한데 있다고 하였다. 또 花房은 ‘수般暴擧는 일부 병사의 소행이 아니라 반드시 政黨間의 격돌에 기인된 것임으로 그 根基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정부의 전복과 왕위의 안위조차도 아직 測知할 수 가 없다’⁹⁾고 관망하면서 금후의 조선정부와의 어떠한 교섭도 武力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가 종래 가졌던 침략적인 소신을 솔직히 토로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심경은 그가 조선을 출국할 무렵에 고종에게 올렸던 귀국이유에 관한 변명과 近日內에 다시 來韓하여 答판을 전개할 것이라는 성명에서도 알 수가 있다.

7월 29일 長崎에 도착한 花房은 즉시 군란의 전말을 전보로 외무성에 보고하고, 부산·원산 거류지의 일본인들이 위협하므로 군함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차후 조선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강력한 군사적 압력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이튿날 花房의 전보를 받은 외무경 井上馨은 參議 겸 陸軍卿대리 山縣有朋 등과 조선군란을

9) 武田勝藏 『明治15年 朝鮮事變と花房公使』, pp. 50-59.

10) 앞의 책, 『日本外交文書』15, 文書番號 116號 <朝鮮激徒暴動顛末記> 참조.

협의하고, 花房을 下關으로 초치하는 동시에, 영국측량선 비어호가 다시 인천으로 귀환하는 편에 屬員 2명을 동승시켜 군란 후의 서울 정세를 탐지하도록 하였다.

이어 太政大臣 三條實美에게 조선군란의 전말을 보고하고 해군경 川村純義와 대책을 의논한 뒤 긴급각의를 소집하게 하였다. 이날 밤 三條의 처택에서 岩倉具視·黑田清隆·山縣有朋·寺島宗則·大木喬任·山田顯義·井上馨 등 당대의 거물급 정객들이 모여 조선의 변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이번 조선의 사태에 대하여 무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무단(대륙)과 黑田은 즉시 개전을 주장하고, 井上 등은 군함을 이끌고 가서 무력시위를 통해 담판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양론이 대립하여 결론을 보지 못하고 산화하였다.

이튿날에는 일왕 明治의 친재 아래 각의가 열렸다. 여기서도 완·급 양론으로 갈리어 즉시 개전과 무력시위를 통한 담판으로 논의가 분분하였다. 井上은 강경하게 군함으로 무력시위를 하여 담판하고, 이 담판이 결렬되면 출병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니 이번 사건의 처리는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일왕은 결국 井上の 주장을 채택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각의는 외교적인 담판을 花房에게, 군사상의 일을 군대 지휘관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였다.¹¹⁾

각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통과시킨 井上은 스스로 下關까지 출장하여 花房과 회견한 후 그에게 각의합의에 의한 훈령을 부여했던 것인데, 그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近藤영사를 군함 2척, 수병 150명과 함께 다시 仁川으로 파견하여 인천부사와 예비교섭을 하게 할 것.
2. 花房공사의 호위를 위하여 육군 300명을 배치한다.

11) 井上馨侯傳記編纂會編, 『世外井上公傳』3, pp. 454-455, pp. 457-458 참조.

3. 육해군을 파견해도 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사절과 거류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약 폭도에 조우당할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측에서 先制攻撃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개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각 본국정부에 請訓해야 한다¹²⁾는 것 등이었다.

이 밖에 外務訓令 및 기밀훈령으로서 花房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국정부가 문서로서 공식 사죄를 청할 것.
2. 피해자 유족 扶助料를 지급시킬 것.
3. 범인을 체포 처형시킬 것. 만약 조선국정부 수뇌중 본건에 관련된 자가 있으면 그를 파면 처형시킬 것.
4. 조약 무시에 의한 손해배상과 군비배상을 청할 것.
5. 조선국정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단정되는 경우에는 거제도 혹은 울릉도의 할양을 요구할 것.
6. 조선국정부가 일본국정부의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병력으로 인천을 점령하고 後命을 대기할 것.¹³⁾

이같은 훈령의 진의는 물론, 임오군란을 계기로 하여 일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침략적 야욕을 하루아침에 달성하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어용신문들을 통해 조선의 군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본조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다.¹⁴⁾ 특히 선동적인 그림을 넣은 팜플렛이나 군란에 관한 채색화 등을 의식적으로 많이 게재하여 국론을 조선문제로 휩쓸리게 하였다. 이같이 임오군란에 관한 보도가 전국을 휩쓸자 “開戰을 하라! 軍備獻金を 바치

12) 앞의 책, 『日本外交文書』15, pp. 221-222, 文書番號 199號 〈事變處理ニツイテ訓令ノ件〉 참조.

13) 田保橋潔, 앞의 책, p. 795.

14) 宮武外骨編, 『壬午鷄林事變』(新聞雜誌所載), 1932, 참조.

자! 의용병으로 입대하겠다.”는 등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일본정부는 이같이 조성된 국내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정책에 강경책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井上은 육군경대리 山縣有朋 및 해군경 川村純義와 협의한 끝에 파병을 결정하고 각의의 동의를 얻었다. 이리하여 육군성에서는 熊本鎮台에서 1개대대의 병력, 그리고 해군성에서는 당시의 최정예인 전함 金剛·比叡·清輝·日進 등 군함 4척을 파견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公使와 호위군대 승선용으로는 공부성 소유 기선 明治丸과 知歌浦丸을 징발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육군소장 高島鞆之助와 해군 소장 仁禮景範을 각각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육·해양경으로부터 두 지휘관에게 수여된 명령과 훈령은 파견군의 임무로서 花房이 중대사명을 이행할 때까지 충분히 호위할 것과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즉시 군사력을 발동하여 인천 濟物浦를 점령하고 그 후의 전투는 정부의 명령이 있는대로 수행하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 훈령은 井上이 花房에게 부여한 훈령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었다. 즉 외교수단에 의해서 교섭이 결렬되어 전권공사가 인천으로 퇴거하면 육해파견군은 즉시 제물포 일대를 점령하여 조선정부를 위협하고 그 비상수단으로서 조선의 굴복을 強迫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일본은 준전시체제를 펴고 조선을 군사력으로서 문책한다는 침략적인 방안을 확정했던 것이다.¹⁵⁾

그런데 이러한 對韓武力外交方針에 대하여 당시 東京 주재 열국외교단은 그 움직임에 극히 주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그러한 관심과 주시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각국 공사에게 ‘일본정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정부를 문책하기로 하였다’는 통첩을 보내어 침략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井上은 8월 2일에 각별히 주청 田邊임시대리공사에게 打電하여 일본군 파견목적에 관

15) 白鍾基, 앞의 논문, p. 172.

해서 청국정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라는 훈령을 보내었다.

이같이 일본정부가 침략성을 합리화하고자 온갖 부심책을 다하고 있을 무렵에 그러한 조선문제에 각별히 심각한 우려심을 갖었던 주일청공사 黎庶昌은 7월 5일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일본의무성을 방문하고 서한을 외무경대리 吉田清에게 제출한 후 일본의 파병권에 대하여 항의함과 함께 청국으로부터 馬建忠을 파견해서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吉田대리는 당일 즉시 외무경의 방침에 따라 조정을 사절하고 그들의 파병방침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때문에 결국 청국의 조정제외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黎공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9일에 다시 總理衙門의 訓電에 따라 서한을 수교하였다. 그 요지는 청국이 宗主國의 의무로서 육해군을 파견하여 屬邦구제 및 속방내에 있는 조약국 일본의 공사관 보호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吉田대리는 8월 6일의 각의 취지에 따라 다시 공한을 전달하고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선을 자주국으로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공사관의 보호는 일본국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만약 청국이 派兵代辦을 護持하면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¹⁶⁾고 반박했던 것이다.

黎공사는 일본측의 이러한 주장을 거의 예상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淸韓宗屬關係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이 吉田공한을 심히 중대시하고 또다시 12일에 서한을 보내어 일본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청국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거듭한 후 일본측의 재고를 촉구하였다. 이 청한중속론은 청·일 두나라의 중대안건이었으니 만큼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일본은 금번의 군란에 관련시켜 이것을 거론하면 할수록 외교상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론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침략성을 폭로하는

16) 앞의 책, 『日本外交文書』15, 文書番號 105 참조.

격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吉田대리는 당일로 즉시 결단을 내려 거론을 끝맺음했던 것이다.

한편 花房공사는 앞서 본 훈령을 휴대하고 8월 10일 下關에서 인천으로 향발했는데, 이때 高島·仁禮 두 소장도 군함 4척, 수송선 2척에 1개대대의 병력을 통솔하고 동행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그들의 이러한 비상수단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선이 굴하지 않고 반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東京鎮臺의 기병 1개소대 및 輸卒·헌병 다수를 福岡에 파견해서 熊本鎮臺의 병력과 합쳐 혼성여단을 편성시킨 후 명령이 하달되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두었다. 당시 일본군부는 이 군사력으로서 조선군을 격파하고 서울을 점령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 참모부가 설치된 후 첫번째의 海外動員으로 되는 것이다.

Ⅲ. 軍亂직후의 日本의 對韓侵略정책

花房은 그에게 부가된 對韓武力談判의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8월 12일(음 6.29)에 高島·仁禮 두 소장과 함께 金剛 이하 4척의 군함을 인솔하고 인천항에 정박하였다. 이미 조선정부에서는 花房이 다시 병력을 동원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세한 육해군을 동원해 오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花房이 그 우세한 병력을 그의 호위용이란 명목하에 인솔하고 서울에 들어오려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영의정 洪淳穆은 그날로 花房에게 서한을 보내어 이른바 호위병의 인솔은 조선 軍民의 의아심을 깊이 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극력 피해 줄것을 요망하였다. 그러나 花房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15일 近藤에게 1개중대의 육병을 대동 先發시켰던 것이다. 이를 묵과하지 못했던 대원군은 당일 즉시 반점관 尹成鎭과 差備譯官 玄昔運을

花房에게 방문시키고 군란으로 인하여 館宇의 파손이 많기 때문에 行館을 적당히 정돈할 때까지 입경을 연기하라고 간청케 하였다. 그러나 花房은 이에 응하지 않고 16일에는 육병을 인솔하고 입경했으며 또 18일에는 高島·仁禮 두 소장도 뒤를 따랐던 것이다. 花房은 8월 20일 반접관의 인도에 따라 近藤이하 육병 2개중대를 인솔하고 창덕궁으로 향하여 重熙堂에서 고종을 알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번의 사변은 실로 양국교제의 斷續에 관한 중대사건이오나 아국성상(천황)께서는 이것이 조선국왕의 본의가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력 和局을 保持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花房을 파견하여 상의토록 명하였다’¹⁷⁾는 그의 방한취지를 설명한 후 다시 ‘금일 국왕에 알현하고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은 화국의 보전을 희망하는데 있다’고 제언하면서, 군란처리에 대한 책자를 바치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3일 안에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영의정과 예조판서에게 답판을 전달시키겠다’고 답변을 내렸다. 이어 延賢閣에서 대원군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측의 협상방침을 설명하였다. 이때 花房이 제시한 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으로부터 15일 이내에 凶徒의 두목과 그 黨與들을 포획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
2. 피해자는 후하게 우대하고 예장함으로써 그 최후를 후하게 처리해 줄 것.
3. 5만원을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급여할 것.
4. 흉도의 폭거로 일본국이 받은 손해와 출병준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에 비추어서 배상할 것.
5. 원산·부산·인천 각 항의 里程을 넓혀서 사방 백리로 하고 새로이 양화진을 개시장으로 하며 함흥·대구 등지는 왕래 통상을 허

17) 위의 책, 《日本外交文書》 15, 文書番號 132號: 『高宗實錄』 권19, 壬午 7月 7日 참조..

락할 것.

6. 일본의 공사·영사와 그 수행원·고용인 등이 내지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락할 것.
7. 지금부터 5년간은 일본 육군병 1개대대를 두어 공사관 호위의 임무에 당하게 할 것.

그런데 이 요구서에는 외무경 井上이 지시한 바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를 하라고 요구한 항목이 빠져 있었으므로 다시 21일 花房은 영의정 홍순목에게 추가 1조를 넣고 회답기한을 통고하였다.

특히 대관을 파견하여 국서를 갖추어서 일본에 사과할 일.¹⁸⁾

그러나 대원군은 시일의 遷延을 획책하면서 청국사절의 입경을 맞이한 후 그들에 의한 조정을 바라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대원군은 영의정 홍순목에게 압력을 가하여 閔妃의 ‘山陵看審’을 핑계로 회답연기에 관한 서신을 花房에게 발송하였다.¹⁹⁾ 그러나 그는 자기가 요청한 최후통첩의 회답기간을 고의로 천연시키는 것으로서만 알고 심히 격분하여, 高島·仁禮 등과 협의한 끝에 8월 2일자 외무경 훈령중에 ‘일본측 요구의 답판을 승락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조선국에서 和平을 파괴한다는 명백한 心跡이 됨으로 일본정부는 부득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최후의 처분을 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훈령의 취지에 따라 회답기간 하루전인 8월 22일자로 최후통첩을 고종과 영의정에게 보내었던 것이다. 이 통첩의 요지는 조선정부 당국자의 무성의를 통책하는 한편 국교가 단절되어도 그 책임은 전혀 조선측에 있다는 것이다.²⁰⁾

18) 『京城變動之始末書』(위의 책 『日本外交文書』15, pp. 249-254, 文書番號 133號 再引用) : 『備邊司謄錄』 壬午 7月 7日 참조.

19) 田保橋梁, 앞의 책, pp. 808-801.

20) 앞의 註 18) 참조.

이같은 단호한 태도를 표시한 花房은 23일 近藤에게 뒤처리를 일임한 뒤 제물포로 떠났다.

이에 따라 대원군은 전국의 병력을 들어 일본군의 무력침공에 대항할 준비를 취하게 하는 한편, 南陽에 주둔하고 있는 청국의 馬建忠에게 급히 서한을 보내어 일본측의 요구조건을 알리게 하고 즉시 입경하여 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花房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앞서 일본 각의의 결의대로 인천을 점령하여 담판의 저당으로 삼고자 했던 강경한 방침을 재고하게 되었다. 近藤의 보고대로 청군은 서울에 투입되었고, 또한 그 후군이 계속해서 조선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일본군의 인천점령은 결국 청·일 양군의 무력충돌에까지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 花房이 선뜻 인천점령을 꺼린 것은 이같은 3국분쟁의 위험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개 외교관으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그는 육해군을 인천과 제물포간에 주둔시켜 놓고 본국에다 이후의 조치를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는 달리 앞서 花房의 국교단절을 위협하는 서한을 받은 흥순목은 이에 회답하여 '조선은 현재 국상 중이므로 시일을 요하는 것은 隣國의 사신으로서도 이것을 양해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8월 25일에 花房의 서한을 다시 받고서도 흥순목은 성급한 태도를 개탄하는 내용의 회답을 하였다. 이 회답을 받은 花房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여졌다. 청국의 개입으로 사태는 매우 위험스러워지고 있었지만 당사국인 조선의 입장은 그렇지도 않게 보였던 것이다. 花房은 이에 다시 8월 26일 흥순목에게 서한을 보내어 이튿날부터 2일간 제물포에 머물면서 조선정부와의 교섭에 응할 뜻을 비쳤다.

한편 대원군의 중재 요청을 받은 청국의 마건충은 사태의 급박함에 놀라 육해병 300명을 이끌고 즉시 서울로 향하였다. 또한 南陽에 있던 吳長慶과 협의하여 청군 전병력을 서울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같은 청·일 양국의 무력시위로 전운이 긴박해지자 北京과 東京의

공사를 점입하고 있던 영국공사 파아크스(H. S. Parkes)는 조선에서 청·일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李鴻章을 설득시키는 한편 일본정부를 달래기에 힘썼다.

이같은 제3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진충은 계속 청군의 입경을 명하고 조선정부의 당료자들과 접촉하였다. 대원군을 비롯한 집권층들의 거의가 대일강경론을 주장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면 조선에서의 우위권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마진충은 花房과 회담을 갖고 조선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한편, 조선정부에게도 일본의 요구조건을 수락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조선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진충은 한·일 어느 편에도 경중의 비중을 두지 않는 입장에서 회담을 주도하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일강경론자들을 조선정부 내에서 추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대일강경론의 총수 대원군을 제거하는 길만이 이 회담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원군을 납치하여 保定府에 幽閉하였다.²¹⁾ 대원군만 제거하면 군란 이후에 등장한 집권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원군의 납치로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확고하게 된 후 조선 정부 자체의 일본에 대한 태도도 급격한 변화를 하였다. 즉 종전에 강경했던 태도를 버리고 청국의 주선을 받아들이며 일본이 앞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8월 27일(음 7.14) 고종은 李裕元을 전권대신, 金弘集을 전권부관으로 임명하여, 이튿날 이들 일행은 인천·제물포에 정박중인 일본군함 比叡號에 승선 중인 花房과의 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회담벽두에 일본전권 花房은 李裕元에 대하여 그가 앞서 제출한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수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측 전권위원들은 앞서 제출한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난색을 표시하였다. 양자의 주장이 相反된 채 29일에 재개된 회담에는 참

21) 權錫奉,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上·下) 『人文學研究』3, 4·5합집, 中央大人文學研究所, 1976·1977 참조.

석치 않고 전권부관 김홍집만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花房은 조선측의 반대를 고려하여 전날 군함 迅鯨號 편으로 전달된 외무경 井上의 추가훈령을 참고로 한 이른바 花房修訂案을 제시하고 동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김홍집은 그 수정안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원안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심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흥분한 花房의 태도와 언사는 점점 협박적으로 되어 회담장소는 외교적 상의를 하는 장소라기 보다 욕설을 토하는 장소로 변하여 조선측 전권위원들의 악감정을 더욱 초래하는 결과로 되었다. 그런데 花房은 그의 강경한 태도를 추호도 弛緩치 않고 그날로 花島의 別將營에 있는 이유원을 방문하여 회담은 다시 시작되었다. 화도에서의 회담은 거의 일본측의 위협과 강박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또 회담의 실질적인 중요사항들은 조선측에 강압으로 수락케 하였다. 수정이라야 겨우 원안의 제5조인 함흥·대구의 개시를 삭제하고, 제7조의 호위병 1개대대를 약간명으로 한다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결국은 花房의 협박적인 武力外交에 굴복하여 그의 수정안 전부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말았다.²²⁾

맺 음 말 (濟物浦條約의 侵略相)

이때 두나라 대표가 기명조인한 濟物浦條約과 修好條規續約에 관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전 6조로 된 제물포조약은 일본측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의 그대로 관철시키는 내용이었다. 제1조에서는 범인의 체포기일을 20일로 한정하고, 만약 조선이 그 기일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이 인원을 파견하여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정부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다음 제3조에서는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5

22) 白鍾基, 앞의 논문, pp. 178-179, 참조 : 앞의 註 1) 참조.

만원의 과중한 보상금을 지급토록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부담하기 어려운 지나친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권위원들이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제4조에서는 일본군의 출동비용과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무력시위를 하고자 남의 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놓고서 그 비용을 담당하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철수할 당시 그들의 손으로 방화한 공사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그러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제5조에서는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군대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그들 병영의 시설과 수선에 대한 비용을 조선정부에 부담시킬 것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주둔병력의 숫자를 약간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얼버무려 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1개대대의 대병력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들 주둔군의 병영시설과 수선비용을 조선에 부담시킨 처사는 일찌기 영·불 두 나라 군대가 일본에 와서 행한 침략적 수법을 그대로 조선에 써먹은 것이었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고도 만족하지 않아 일본은 제6조에서는 조선정부로 하여금 사과하는 사절을 특파하여 일본에 사과할 것까지 정해 놓았다. 이리하여 이 제물포조약은 近代諸國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주의자에게 굴복한 조선의 위정자는 이 조약을 군란의 선후책으로 타결된 것이라 하여 두 나라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조인과 동시에 그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의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물포조약과 함께 체결된 수호조규속약은 제1조에서 부산·인천·원산항의 間行里程을 50리로 더욱 널리 개방하기로 되었으며, 또 楊花津 마저 개방하기로 되었다. 제2조에서 일본의 공사 영사는 물론 심지어는 영사관의 隨員까지도 조선내지에서 자유자재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속약은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부터

여러차례 일본정부가 조선정부에 요청한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임오군란의 결과에 의하여 드디어 일본측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같이 제물포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의 체결은 임오군란의 결과로 빚어진 일본의 또하나의 侵略相 이었다.²³⁾

이 조약이 공포·발효됨과 동시에 제물포 濁溪岷에서 일본인 조난자 堀本 이하 13명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조선측에서는 예조좌랑 嚴錫瓘 등이 예물을 갖고 諸靈을 慰藉하고자 참석하였다. 또한 군란의 주모자는 청국군에 의하여 처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花房은 그들이 진범인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그 때문에 조선정부는 부득기 다시 포도청에 명하여 9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 供狀을 일본측에 보내었다.

花房은 군란의 사후처리가 일본측의 요구대로 시행되는 상태를 살피고 난 다음 다시 井上의 추가훈령에 따라 대원군이 건립한 斥和碑의 파괴를 요구하였다. 그 요구를 거절 못한 조선정부는 경향각지에서 그것을 이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쇄국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한편 유림의 衛正斥邪論을 일소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 고종을 알현하고 9월 18일 남양만에 정박중인 孟春號에 가서 청국의 마건충·丁汝昌을 예방하고, 그는 이튿날 明治丸 편으로 修信使 朴泳孝 일행을 인도하여 東京에 도착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은 2년 후에 竹添進一郎 공사가 朴泳孝·金玉均 등의 개화(친일)당을 조종하여 일으킨 甲申政變을 통하여 더욱 노골화 되었던 것이다.

23) 앞의 註 1) 참조.